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2011. 12.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
-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운영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명칭 개정
-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정관(안 제2조 ~ 제3조)
-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의 기구(안 제4조 ~ 제5조)
- 운영협의회의 임원 및 위원의 해촉(안 제6조 ~ 제7조)
- 운영협의회장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운영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안 제9조)

4.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훈령」,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구미시 재무회계규칙」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2011. 12.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기금으로 독립 재산제로 운영되던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되어 세입은 구미시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은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직접 관리·운영하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구미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구미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명칭 개정
- 안 제2조, 3조에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정관
- 안 제4조, 5조에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위원회의 기구
- 안 제6조 및 제7조에 운영협의회의 임원 및 위원의 해촉
- 안 제8조에 운영협의회장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과
- 안 제9조에 운영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 폐지 및 경상북도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